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1. 산사태 위기경보의 세부 발령 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4 삭제)

#### 가.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
  - \* 표준(재난관리주관기관)-실무(관계 중앙행정기관)-행동매뉴얼(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 표준매뉴얼 : 위기경보 단계별 세부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 등 명시
-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세부 발령 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에 한계
  - \* 개정 소요 기간 : (표준매뉴얼) 약 3개월, (시행령) 6개월 이상

#### 나. 제·개정 내용

- 산사태 위기경보의 세부 발령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 4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 현행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모두 명시
    - \*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 제26조제1항(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발령)
    - \*\* 조치사항 : 제26조제2항(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대피명령, 재난자막방송 등 조치)
  - 제3항 및 별표 4(세부 발령 기준)를 삭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행정규칙, 표준매뉴얼 등)이 정하도록 함
    - \* 제26조제4항 :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삭제하고, 행정규칙이나 매뉴얼 등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체계 관리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 고

## 관련 법령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산림재난방지법」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 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751호)

제5조(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

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이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계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⑥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계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단계 | 발령기준                                                                                                                                                                                                                              | 조치기준                                                                                                             |
|----|-----------------------------------------------------------------------------------------------------------------------------------------------------------------------------------------------------------------------------------|------------------------------------------------------------------------------------------------------------------|
| 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li> <li>○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자원 정비</li> <li>○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 장소 점검·정비</li> </ul>                  |
| 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li> <li>○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산 통제</li> </ul>                                                        |
| 경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li> <li>○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li> <li>○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li> <li>○ 주민대피 명령</li> </ul> |
| 심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li> <li>○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li> <li>○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li> <li>○ 피해대책 마련</li> </ul>                            |

비고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발령한다.